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1월 13일, 김성회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1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5.11.20.) 상정, 공청회 개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2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6.03.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성회의원)

우리 사회는 사적 이윤과 자본 중심의 경제시스템 심화로 인해 소

득 불평등 심화, 계층 간 양극화, 지역공동체 붕괴 및 사회적 신뢰 저하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음. 특히, 기존의 경제성장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양질의 일자리 부족, 사회서비스 격차, 환경 문제 등은 공동체의 회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2023년 유엔(UN)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사회연대경제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사회혁신에 크게 기여하는 수단임을 공인하였음.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UN) 등의 국제기구들은 회원국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제도적 기본 틀 설계와 정책 수립 등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프랑스, 스페인 등 여러 국가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률을 마련하는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의 현실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시대적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을 통해 분산적으로 육성되고 있음. 그 결과, 사회연대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공통의 정의와 기본원칙이 부재하며, 관련 정책은

단편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이는 사회연대경제 주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를 저해하고,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도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에 본 법안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기본 원칙을 명확히 정립하고, 범부처적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함. 나아가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및 공공부문의 우선구매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시장 접근성과 재원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궁극적으로 이 법의 제정은 사회연대경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정책의 수립·총괄·조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립하여 사회연대경제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임.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순환 경제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관 협치에 기반한 정책추진체계를 구현하여 양극화 해소와 지역사회 혁신을 이끌어낼 것임. 이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 공동체의 포용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 필수적인 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에 따라 검토보고 생략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동 제정안 등 9건의 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 사회연대경제는 특정 이념과 결부된 측면이 있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추세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관한 개별부처의 관리·지원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가 사회연대경제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확대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정부 의존을 심화시켜 자생력이 약화되는 것이 우려됨.
- 사회연대경제는 유럽의 협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민주공화국이 추구하는 공동체주의에 부합하고, 불평등·양극화 등 시장주의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사회연대경제의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기 위하여는 행정안전부가 정책을 총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비용

이 소요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소외된 계층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대신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일정한 지원이 필요함.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